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555,726,131 | 16,671,784 |
| 일반회계 | 503,538,067 | 15,106,142 |
| 특별회계 | 52,188,064 | 1,565,642 |
| 기타특별회계 | 52,188,064 | 1,565,642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7,211,575 | 516,347 |
|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| 23,203,633 | 696,109 |
|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533,733 | 16,012 |
|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| 235,386 | 7,062 |
|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5,370,128 | 161,104 |
|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| 5,633,609 | 169,008 |

제 2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
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6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0,672,52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3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